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99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위성락·정태호·윤호중

임호선 · 장철민 · 이훈기

서영석 · 남인순 · 박홍배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장은 원수(元帥)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0497호) 및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049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한국은행 총재"를 "참모총장·「군인사법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명하려는 직위·한국은행 총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· ② (생 략)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정보 원장 ·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·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·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• 국세청장 • 검찰 총장 · 경찰청장 · 합동참모의장 -----참모총장·「군인사 · 한국은행 총재·특별감찰관 법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(이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명하려는 직위 • 한국 "헌법재판소재판관등"이라 한 다)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은행 총재----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· 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

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	
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